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105048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국토교통부장관
변 론 종 결 2016. 3. 3.
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1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철도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의 선임연구원인데, 철도연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2010. 12. 21.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 표준체계 구축 및 성능평가를 연구개발과제로 하여 총 연구개발기간을 2010. 12. 23.부터 2014. 7. 7.까지로 하고,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공동, 협동연구책임자로 참가하는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협약(이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연구개발 중 2013. 6. 4. 한국철도학회에 B, C, D, E, F, G 등 6인을 공동저자로 하는 「H」(이하 '이 사건 게재논문'이라 한다)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한국철도학회에 접수되었고, 한국철도학회는 2013. 12. 23. 위 게재논문을 한국철도학회 논문집 I에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J' 관련 논문 발표, J 관련 성과 확산'을 목표로 스페인 출장을 가면서(출장기간은 2014. 1. 5.부터 2014. 1. 12.이었다) 원고를 포함한 K, F 3인이 공동저자로 된 「L」(이하 '이 사건 발표논문'이라 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2013. 11. 28. 국제학술대회인 "8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CIT'14)"(이하 '이 사건 국제학술대회'라 한다)에 접수하였고, 2014. 1. 10. 이 사건 발표논문을 스페인에서 발표하였다.

라.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철도연과 진흥원에 "국문논문인 이 사건 게재논문과 영문논문인 이 사건 발표논문은 내용은 동일한데 저자가 다르다"는 취지의 익명제보가 접수되었고 철도연은 2014. 7. 15. 논문 도용 관련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게재논문과 이 사건 발표논문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발표 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표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논문 발표를 통한 부당한 개인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국내외 연구성과의 홍보 활동을 위해 의도적이지 않은 과실로 보이며, 이 사건 발표논문이 학술대회 발표논문인 점을 볼 때 결과 처분시 정상 참작이 요구됨"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진흥원은 2015. 5. 11. 원고에게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 위반"을 사유로 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57조를 적용하여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한다고 통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5. 22. 위 제재통보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재논문은 원고가 주파수연구반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얻은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고, 이 사건 발표논문 역시 동일한 내용에 대한 해외홍보차원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의 근간이 된 연구에 참여하였던 이상 표절 등에 관한 규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하였고, 진흥원은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2015. 7. 8. 제재조치평가단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제재조치평가단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였다.

사. 피고는 2015. 7. 30.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 2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에 근거하여 "논문 표절,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를 사유로 1년간(2018. 6. 11.~2019. 6.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에 공동저자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게재 논문은 원고가 공동연구에 참여한 철도전용 주파수 연구반 보고서를 근간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고, 이 사건 발표논문도 이 사건 게재논문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 자신이 공동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것에 불과하여 이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 부존재 내지는 재량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발표논문에 원고를 공동저자로 표기한 것이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서는 금지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한 종류로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호에서는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표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 중 하나로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교육부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제12조에서 연구부정행위인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등의 의미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다.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갑 제1 내지 10호증, 제1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출처나 인용표시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게재논문의 근간이 된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하였음에도 게재논문의 공동저자로 명시되지 않았을 뿐이라면서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자로 명시된 것이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의 공동저자 중 6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은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의 근간이 되는 연구에 어느 정도로 기여한 것인지 역시 불확실하다(오히려 논문의 저자명 표기시 각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기재 순서를 정하는 학계의 관행상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의 6명의 저자 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 작성에 있어 실질적이고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나) 이 사건 발표논문의 내용을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게재논문의 제목은 「H」 이고,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제목은 「L」로서 H에 대한 '한국에서의' 논의라는 점을 부각시킨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목이고, 각 논문의 페이지수나 배치된 도표와 그래프의 내용, 위치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게재논문과 이



사건 발표논문의 각 문단별 소제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게재논문	이 사건 발표논문
1. 서론	1. Introduction
2. 1 철도 통합무선망 요구사항	2. Requirement of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2.1.1. 철도 통합무선망 일반적 요구사항	2.1. General requirements
2.1.2. 철도 통합무선망 기능적 요구사항	2.2. Functional requirements
2.2 철도 통합무선망 표준화 동향	3. Standards of Railway Wireless Communication
2.2.1. 세계 이동통신 표준화(3GPP)동향	3.1 Trends in Standardization of world mobile communication(3GPP)
2.2.2. 세계철도연맹(UIC) 표준화 동향	3.2 Current status of UIC standardization
3. 결론	4. Discussion and Conclusion

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논문의 문단별 소제목의 내용은 일치하고(다만, 이 사건 게재논문 중 '2.3 국내 철도 전용 주파수 선정시 고려사항' 부분은 이 사건 발표논문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는 국내에 국한된 내용이라서 해외 학술대회에서의 발표 목적인 이 사건 발표논문에 포함시키기 부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목차 하의 세부 내용들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재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일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발표논문의 내용을 이 사건 게재논문과 대부분 동일하게 작성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발표논문이 이 사건 게재논문을 모태로 하여 이를 영문으로 번역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나 이 사건 게재논문의 저자들에 대하여 언급함 없이 자신을 이 사건 발표논문의 공동저자 중 1인으로 기재하여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의 실질적인 내용이 모두 이 사건 게재논문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이 사건 게재논문의 저자가 아니었던 자신을 이 사건 발표논문의 저



자로 표기한 점과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대부분의 내용을 동일하게 작성한 행위는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및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표절'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한편, 표절은 타인의 연구내용 등을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설사 이 사건 게재논문의 공동저자들이 원고의 이 사건 발표논문 발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은 표절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발표논문을 발표할 무렵인 2013. 11.경 시행되던 개정 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만이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공동연구에 참여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이 사건 게재논문의 공동저자로 명기된 것은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 내용의 상당부분을 이 사건 게재논문으로부터 인용하였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출처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게재논문의 저자로 등재되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게재논문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도 불확실한 이상 원고의 행위가 자기표절, 즉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게재논문의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지명, 권(호), 페이지 수 등이 확정되어 적절한 인용이 가능한 시점은 2014. 1. 7.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



문을 이 사건 학술대회에 접수할 당시인 2013. 11. 28.에는 적절한 인용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나, 인용의 형식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사건 발표논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재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표절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행위가 표절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발표논문에 적절한 인용 없이 이 사건 게재논문의 내용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발표논문은 국내 연구성과의 홍보를 위해 외국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철도연 논문실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개발협약 종료에 따라 진흥원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상에 논문발표 실적에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사용한 행위와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발표논문을 이용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의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점,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에 따라 해당연구비를 반납한 점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당초 원고에 대한 3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 처분을 1년으로 감경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훨씬 커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4-26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조형목
	판사	김선화



별지

관계법령

▣ 과학기술기본법(2015. 12. 22. 법률 제13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 3년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 3년 이



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제30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 ①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¹⁾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1조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기준)

-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 3년. 다만,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참여제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 5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년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좌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 3년 이내
 -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 4년 이내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 1년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3년 이내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이 영 또는 협약을 위반한 경우 : 2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이하 "연구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제30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2014. 8. 12. 대통령령 제25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6

1. 영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위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영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변조: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인위적으로 변형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영 제30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4. 영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절: 연구자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개발 자료나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5. 영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5조(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등)

2.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²⁾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 제55조 제2호의 경우 2014. 12. 2. 훈령 제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로 규정되어 있었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4-26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